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 (찬성자 21명)

나. 의안번호 : 제 2281 호

다. 발의일자 : 2021. 4. 1.

라. 회부일자 : 2021. 4. 6.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6항 신설(‘19. 12. 3)에 따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안전감찰 전담기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등 경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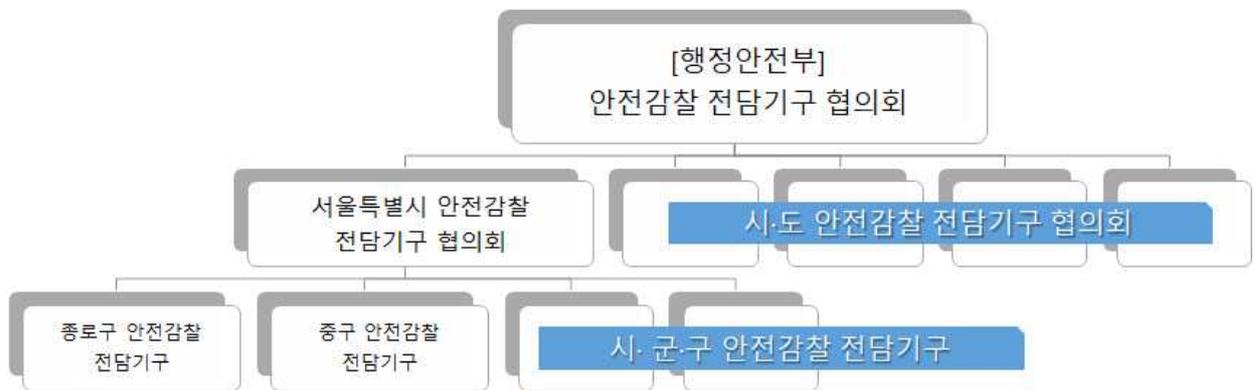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77조 제6항1) 신설(‘19. 12. 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그림] 참조).



[그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직도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 6. 2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86조의22)를 신설하면서 제6항에 시도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 전담기구 협의

1)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생략)

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 7. 29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표준조례안(붙임 #1)을 시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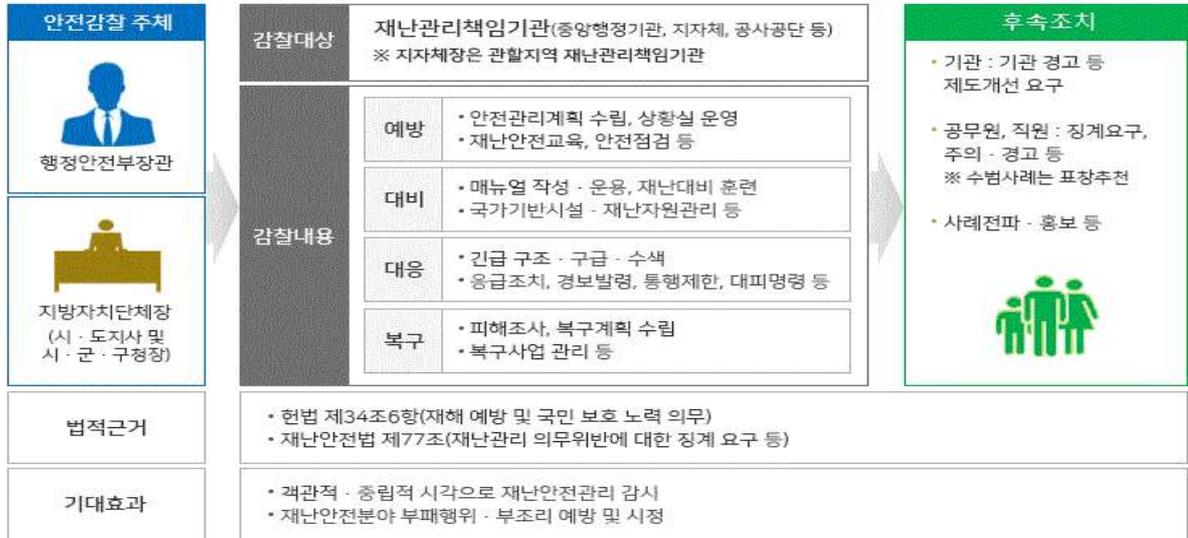
[표] 제정안 주요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 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감찰 전담기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등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제3조(협의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 협회의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국장 -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시 산하 공사·공단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협의회에 자문위원회 설치 가능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제5조(위원의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제6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정기회의(연 1회 이상)/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고지 위원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 사전 안전감찰 시행 요청 가능

제7조(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건의 검토 및 협의 등 목적 • 협의회 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 •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 가능
제8조(위원의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0조(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가능

■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현황

-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을 감찰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 안전감찰제를 시행해 왔음.
- 서울시는 재난사고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19.7월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그림] 참조),
- 재난관리책임기관(25개 자치구, 서울시 및 산하 공사·출연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해 왔음.



[그림] 안전감찰 개념도

○ 서울시는 '19~'20년까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실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총 12건의 정기 및 수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533건의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 처분요구를 하였음([표] 참조).

[표] 2019~2020년 안전감찰 추진실적

년도	구분	연번	감찰명	감찰기간	관계기관 처분요구(건)				행정처분(업체 등)		
					총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고발	벌점	과태료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533	530	2	1	22	63	12
2019년	정기 (특정)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실태	9월 ~10월	2	2	-	-	-	-	2
	수시 (언론보도 등)	2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9월 ~10월	62	61	-	1	-	7	-
2020년	정기 (특정)	3 (중앙·시 협업)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2월 ~3월	12	12	-	-	-	-	-
		4 (시·구 협업)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6월 ~7월	422 [†]	422	-	-	22	53	9
	수시 (언론보도 등)	5	성산대교 운행차량 한강 추락사고 조사	1월	1	1	-	-	-	-	-
		6	갯남구 도곡동 하수맨홀 근로자 추락 사고 조사	6월	1	1	-	-	-	-	-
		7	서초동 민간 건축공사장 사망사고 조사	7월	1	1	-	-	-	-	-
		8	이문고가차도 유도 배수관 탈락사고 조사	8월	3	3	-	-	-	-	-
		9	목동교 보수공사 근로자 사망사고 조사	12월	6	5	1	-	-	2	-

	10	성동도로서업소 당직자 교통사고 조사	12월	8	7	1	-	-	1	1
수시 (코로나19 대응)	11	코로나19 소독약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3월 ~4월	1	1	-	-	-	-	-
	1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특별 점검	9월	14	14	-	-	-	-	-

※ 17개 자치구 자체 안전감찰 지적건수 총 884건(시정 420, 통보 1, 현지시정 463) 미포함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 전담기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등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등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해 법 제77조제5항3)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3)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으로 하여금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리고

-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한 적절한 정의라 하겠음.

2) 협의회 기능(안 제3조)

제3조(협의회 기능) 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목적이 행정안전부 전

담기구 협의회의 지원이므로 영 제86조의2제1항4)에 따른 행정안전부 전담기구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3)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시 산하 공사·공단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는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항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4)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⑦ (생략)

- 이는 협의회 위원이 서울시 관할지역 내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6개 시 산하 공사·공단⁵⁾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기타 외부 전문가 등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구성 규모가 적절하다 사료됨.
- 제2항은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영 제86조의2제4항⁶⁾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위원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 즉,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협의회 구성이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서울시 여타 협의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1회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협의회가 감찰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표〕 참조).

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6)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 ⑦ (생략)

[표] 서울시 각종 협의회 위원 임기 및 연임 가능여부

연번	협의회	근거 조례	임기	연임	비고
1	노사민정 협의회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년	가능	
2	통합방위 협의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	-	위원 대부분이 당연직
3	공무원직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가능	
4	청년사회 민관협의회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1회	
5	치안협의회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가능	
6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가능	

4) 회의(안 제6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사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회의의 소집, 개최 등 회의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제2항은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은 회의 개최를 위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 제4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안 제6조는 협의회 회의 개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5) 실무협의회(안 제7조)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 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이라 할 수 있으며,
- 제2항에서 실무협의회는 안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 의 간사(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

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협의회 위원과 실무협의회 참석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협의회 위원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 참석자를 지명토록 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6) 위원의 해촉(안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 등 안전감찰 관련 협의회 위원의 위원은 도덕성, 청렴성 부분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다 사료됨.

7) 협조요청(안 제9조)

제9조(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안전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

8) 수당 등(안 제10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면서,

-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 규정⁷⁾의 권고에 부합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안전감찰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영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조요청, 수당 등 모든 조문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7) 1-1. 일반수용비(210-01목)

가. ~ 자. (생략)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를 이용하고 보안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민간 플랫폼(Platform)도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카. (생략)

- 서울시의 경우 '19.7.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현행 안전감찰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전담기구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 제 호(참고 자치법규안)

△△시(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신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항 신설('19.12.3),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4)에 따라, 조례 표준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시·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협의회 기능(안 제2조)

1) 안전감찰 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

2) 안전감찰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감찰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감찰 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분야 불법행위 등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1) 위원的人数은 1명을 포함,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시·도 부단체장으로 하되, 안전감찰 기구가 감사부서에 편제된 경우에는 감사관
- 3) 위원은 안전감찰 전담기구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 안전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과장 등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되,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4)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안전감찰 기구의 과장급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

라. 회의(안 제4조)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 위원에게 기관별 또는 기관 간 안전감찰을 선행토록 하여, 회의에서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실무협의회(안 제5조)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다양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안 제6조)

협의회에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시(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협의회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회의 구성) ① 지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 협의회 위원장은 ○○시·도 부단체장(또는 감사관)이 된다.

③ 지역 협의회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지역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역 협의회는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지역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 협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지역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 협의회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지역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지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